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22

제출연월일 : 2018년 3월 20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○ 교육부가 2018년 총액인건비 예비통보 대비 확정통보에서 기준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증원 (안 제2조): 증 12명 (7,243명 → 7,255명)

○ 본청 · 교육지원청 ·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

: 증 6명(6,753명 → 6,759명)

○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

: 증 6명(485명 → 491명)

나.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○ 총계 증원: 증 12명 (7,243명 → 7,255명)

- 일반직 정원 증원: 증 6명 (6,755명 → 6,761명)

· 4 · 5급: 증 1명 (6명 → 7명)

· 5급 이하 소계: 증 5명 (6,674명 → 6,679명)

- 특정직 정원 증원: 증 6명 (485명 → 491명)

· 5급상당 이하 장학관 ·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· 교육연구사

: 증 6명 (435명 → 441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[별첨3]

: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 [별첨 2]

다. 협　　의: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

라. 기　　타

○ 신·구조문대비표: [별첨 1]

○ 입법예고(2018. 3.16. ~ 3.18.) 결과: 의견 없음

○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243”을 “7,255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6,753”을 “6,759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485”를 “491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 계	**7,255**				
정무직 계	**1**		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**6,761**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3·4급	3		3		
4급	39		28	11	
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6,679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			
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**2**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
특정직 계	**491**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441				

<비고> 제2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.

【별첨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,2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(생략) 2. 본청·교육지원청·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6,753명 3. 교육전문직원 정원 485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7,255명---------- ----------.
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총 계	7,243				
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6,755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총 계	7,255				
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6,761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
현 행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3·4급	3		3		
4급	39		28	11	
4·5급	6		6		
5급 이하 소계	6,674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			
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2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
특정직 계	485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435				

<비고> 제2조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.

개 정 안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3·4급	3		3		
4급	39		28	11	
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6,679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			
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2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
특정직 계	491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441				

<비고> (현행과 같음)

【별첨 2】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2018년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원이 증가 통보(확정)되어 이를 정원 조례에 12명 증원 반영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

2. 비용추계의 전제

일반직 6명【 ‘4·5급’ 1명, ‘5급 이하’ 5명】, 특정직 6명 【 ‘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’ 6명】 증원에 따른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-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인건비	1,065,558	1,112,762	1,162,057	1,213,536	1,267,295	5,821,208
	소계(b)	1,065,558	1,112,762	1,162,057	1,213,536	1,267,295	5,821,208
□ 총 비용(a-b)		1,065,558	1,112,762	1,162,057	1,213,536	1,267,295	5,821,208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1,065,558	1,112,762	1,162,057	1,213,536	1,267,295	5,821,208
시비	지방세수입						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1,065,558	1,112,762	1,162,057	1,213,536	1,267,295	5,821,208

5. **덧붙이는 의견**: 없음

6. **작성자**: 황혜은 주무관 (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)

Ⅱ. 비용추계 요약

1. 정원 변동내역

○ 일반직: 6명 증원

○ 특정직: 6명 증원

2. 비용소요 추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세 부 내 역
1차년도 (2018년)	1,065,558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1,065,558천원 - 일반직: 70,271천원 × 6명 = 421,626천원 - 특정직: 107,322천원 × 6명 = 643,932천원
2차년도 (2019년)	1,112,762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1,065,558천원×104.43% = 1,112,762천원
3차년도 (2020년)	1,162,057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1,112,762천원×104.43% = 1,162,057천원
4차년도 (2021년)	1,213,536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1,162,057천원×104.43% = 1,213,536천원
5차년도 (2022년)	1,267,295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1,213,536천원×104.43% = 1,267,295천원
계	5,821,208	

※ 비용추계 방법

- 2차년도~5차년도

: 2018년도 처우개선율 4.43%(호봉승급분 1.83% + 공무원 보수인상률 2.6%) 적용

【별첨 3】 **관계법규**

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8.2.27.] [대통령령 제28679호, 2018.2.27., 일부개정]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〈개정 2013.5.8., 2014.6.11., 2016.12.13.〉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3.5.8., 2013.12.4., 2018.2.27.〉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.5.8.〉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3.12.4.〉